

보조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사료종류	명 칭	등록성분			비고 (확인사항)
			최소량(%)	최대량(%)	기타 (제10조 관련)	
1. 품 질 의 저 하 를 방 지 하 기 위하 여 사료 에 첨가 하는 것	가. 결합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주요 성분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주요 물질의 함량으로 표 시 <예> O O O 추 출 물% [최소량] 합제의 경우 는 주요 원 료명과 혼합 비율 확인, 원료명은 혼 합한 사료의 명칭(예. 비 타민A, 비타 민D, 비타민 E 등)을 표 시 부형제의 명 칭 -표시 미 생물 제는 주요 균주명 및 생균수 최소량을 표 시하되, 생 균수는 10 ⁶ 이상(유익균 배양물 및 효모배양물 은 제외) 이 어야 하며 미생물제 단 위는 cfu/g,
	나. 유화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다. 보존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2. 효 용 의 증 대 를 위 하 여 사 료 에 첨 가 하 는 것	가. 아미노산 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합제의 경우 는 주요 원 료명과 혼합 비율 확인, 원료명은 혼 합한 사료의 명칭(예. 비 타민A, 비타 민D, 비타민 E 등)을 표 시 부형제의 명 칭 -표시 미 생물 제는 주요 균주명 및 생균수 최소량을 표 시하되, 생 균수는 10 ⁶ 이상(유익균 배양물 및 효모배양물 은 제외) 이 어야 하며 미생물제 단 위는 cfu/g,
	나. 비타민 제	엽화콜린	엽화콜린	TMA(Trimethylamine) 500ppm 이하	엽화콜린 함량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분함량은 부형제가 식물성 물질이 포함된 경 우 1.5% 이하, 실 리카인 경우 14% 이하이어야 한다.	
		기타 별표 2의 사 료명칭	주요 성분			
	다. 효소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라. 미생물 제	유익균배양물 효모배양물 기타 별표 2의 사 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마. 향미제	원당	자당	조회분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 성분 또는 물질명			
	바. 비단백 태 질소 화합 물	요소	질소		요소의 질소함량 은 45%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코	

				팅제품의 경우 함량적용을 제외한 다.	박테리오파지는 pfu/g으로 표시
	기타 별표 2의 사료명칭	질소	수분 12% 이하		
사. 규산염제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염기치환용량 (C E C) 80meq/100g 이상	수분 12% 이하	Na 벤 토 나 이 트 의 경우는 팽윤도	
	기타 별표 2의 사료명칭	염기치환용량(CEC), 주요성분	수분 12% 이하	주요 광물질명 및 그 함량 확인	
아. 완충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Na 벤 토 나 이 트의 경우는 팽윤도 표시
자. 착색제	천연착색제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팽 윤 도 는 메스실린더에 물100ml와 시료2g을 넣어 측정)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차. 추출제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카. 올리고당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수분		
타. 기타	비타민염산염(베타인염산염)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TMA (Trimethylanine) 500ppm 이하		규산염제는 주요 광물질명 표시
	기타 별표 2의 사료명칭	주요성분 또는 물질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혼합한 것	가. 혼합제	혼합성 보조사료	각 보조사료에서 규정한 주요 최소량 성분. 다만, 보존제의 경우 주성분의 안정(부패 및 변질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가능	각 보조사료에 서 규정한 주 요 최 대 량 성 분	혼합된 원료 및 혼합비율 확인 원료명은 혼합한 사료의 명칭(예. 비타민A, L-메치오닌 등)을 표시 각각의 보조사료는 혼합전에 개별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보조사료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표시